#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613

발의연월일: 2025. 4. 7.

발 의 자:김태선·김병주·윤준병

정준호 · 김영배 · 허 영

위성락 · 장철민 · 박홍배

김주영·박 정·이학영

박균택 • 윤종군 의원

(14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고, 의료·재활사업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자의 생활 안정 지원과 재활·재건 등 특수 의료서비스 제공에 따른 운영비 부담 등으로 인하여 적자가 심화되고 있는 산재·재활병원의 안정적인 운영 지원을 위해서는 해당 특례의 세금 감면율을 상향하고 감면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

고, 의료·재활사업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율을 100분의 80으로 상향하려는 것입니다(안 제27조).

#### 법률 제 호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100분의 50(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에는 100분의 60)"을 "100분의 80"으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근로복지공단 지원을 위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7조(근로복지공단 지원을 위	제27조(근로복지공단 지원을 위
한 감면) ① 「산업재해보상보	한 감면) ①
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이하 이 조에서 "근로복지공	
단"이라 한다)이 같은 법 제11	
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	
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	
분의 25를 <u>2025년 12월 31일</u> 까	<u>2027년 12월 31일</u>
지 경감한다.	
②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	2
보상보험법」 제11조제1항제5	
호의2, 제5호의3 및 같은 조 제	
2항에 따른 의료사업 및 재활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경감한다.	
1.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	1

세 및 재산세의 <u>100분의 50</u>	<u>100분의 80</u>
(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에는	
<u>100분의 60)</u> 을 각각 경감한	
다.	